

199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     |
|-------------------------|-----|
|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 765 |
|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 766 |
| 가. 예산(안) 총규모 .....      | 766 |
|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 767 |
|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 770 |
| 3. 검토 의견 .....          | 775 |

# '9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기 본 방 침

- 지난해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지방세 징수전망액 계상
-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투자사업비 확대
- 투자사업은 가급적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투자

### 편 성 기 준

#### [ 세입예산 ]

-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세입가능액 추가계상
-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등 계상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분 계상

#### [ 세출예산 ]

- 지방직 전환 및 정원조정등 따른 인건비 부족액 우선 확보
- 기동 대책 및 세계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 최대한 반영
- 중앙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전액 확보
- 기타 도정 수행등 필요한 필수 경비 계상

##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가.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670,690,492 | 100  | 585,114,186 | 100  | 85,576,306 | 14.6 |
| 일반회계  | 540,248,701 | 80.6 | 456,720,409 | 78.1 | 83,528,292 | 18.3 |
| 특별회계  | 130,441,791 | 19.4 | 128,393,777 | 21.9 | 2,048,014  | 1.6  |

'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706억 9,049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851억 1,418만 6천원보다 14.6%인 855억 7,630만 6천원이 증액편성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3%인 835억 2,829만 2천원이 증가한 5,402억 4,870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인 20억 4,801만 4천원이 증액된 1,304억 4,179만 1천원의 규모임.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670,690,492 | 100  | 585,114,186 | 100  | 85,576,306 | 14.6 |
| 일 반 회 계                     | 540,248,701 | 80.6 | 456,720,409 | 78.1 | 83,528,292 | 18.3 |
| · 지방세                       | 136,005,000 | 26.1 | 124,005,000 | 27.3 | 12,000,000 | 9.7  |
| · 세외수입                      | 51,660,634  | 10.0 | 40,130,534  | 8.3  | 11,530,100 | 28.7 |
| - 경상적<br>세외수입               | 10,661,751  | 2.0  | 10,543,836  | 1.6  | 117,915    | 1.1  |
| - 임시직<br>세외수입               | 40,998,883  | 8.0  | 29,586,698  | 6.7  | 11,412,185 | 38.6 |
| · 지방교부세                     | 132,209,200 | 25.4 | 112,708,000 | 24.5 | 19,501,200 | 17.3 |
| · 지방양여금                     | 46,943,067  | 9.0  | 43,900,752  | 11.2 | 3,042,315  | 6.9  |
| · 보조금                       | 111,116,919 | 21.4 | 101,188,516 | 20.9 | 9,928,403  | 9.8  |
| · 지방재원                      | 62,313,881  | 8.1  | 34,787,607  | 7.8  | 27,526,274 | 79.1 |
| 특 별 회 계                     | 130,441,791 | 19.4 | 128,393,777 | 21.9 | 2,048,014  | 1.6  |
| · 공기업특별회계                   | 108,989,829 | 83.6 | 107,608,563 | 83.8 | 1,381,266  | 1.3  |
| - 지역개발기금                    | 56,253,914  | 51.6 | 56,253,914  | 52.3 | 0          | -    |
| - 공영개발사업<br>특별회계            | 52,735,915  | 48.4 | 51,354,649  | 47.7 | 1,381,266  | 2.7  |
| · 기타특별회계                    | 21,451,962  | 16.4 | 20,785,214  | 16.2 | 666,748    | 3.2  |
| - 의료보호기금                    | 16,401,051  | 76.5 | 16,356,234  | 78.7 | 44,817     | 0.3  |
| - 대청호특별<br>대책지역환경<br>기초운영관리 | 1,910,526   | 8.9  | 1,866,355   | 9.0  | 44,171     | 2.4  |
| - 농어촌소득<br>개발기금             | 3,140,385   | 14.6 | 2,562,625   | 12.3 | 577,760    | 22.5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3%인 835억 2,829만 2천원이 증가한 5,402억 4,870만 1천원  
으로서

-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2%인 235억 3,010만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38.9%인 324억 7,191만  
8천원임.
- 지정재원은 32.9%인 275억 2,627만 4천원임.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40억 5백만원보다 9.7%인 120억원이 증가된  
1,360억 5백만원으로서,

-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120억원이  
증액되었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01억 3,053만 4천원보다 28.7%인 115억 3,010만원이  
증가된 516억 6,063만 4천원으로서,

- 사용료 수입(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시설사용료등) 1억 2,630만원
- 수수료수입(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838만 5천원
- 순세계잉여금 106억 648만 7천원
- 잡수입(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금외 3건) 8억 569만 8천원이  
각각 증감되었음.

-의존수입인 중앙지원재원으로는 기정예산액 2,577억 9,726만 8천원보다  
12.6%인 324억 7,191만 8천원이 증가된 2,902억 6,918만 6천원으로서

- 지방교부세(지정분 교부세 42건등) 195억 120만원
- 지방양여금 30억 4,231만 5천원
- 국고보조금 99억 2,840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인 20억 4,801만 4천원이 증가한 1,304억 4,179만 1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83.6%, 기타특별회계가 16.4%임.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예금이자 수입 4억 5,237만 5천원
- 가경3지구 선수공급 협약 해지 위약금 6억 3,675만 8천원
- 가경2지구 분양대금 미수금 2억 9,213만 4천원등  
13억 8,12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순세계잉여금 5,530만 5천원
-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 1,048만 8천원  
4,48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 운영비 분담액 △ 9억 5,547만 7천원
- 이 월 금 7억 436만 8천원
- 보 조 금 2억 9,400만원등  
4,417만 1천원이 증액계상됨.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예 산 액       |      | 기 정 예 산 액   |      | 증 감        |       |
|-----------------------------------|-------------|------|-------------|------|------------|-------|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합 계                               | 670,690,492 | 100  | 585,114,186 | 100  | 85,576,306 | 14.6  |
| 일 반 회 계                           | 540,248,701 | 80.4 | 456,720,409 | 78.1 | 83,528,292 | 18.3  |
| · 인 건 비                           | 42,853,100  | 8.2  | 40,357,583  | 9.2  | 2,495,517  | 6.2   |
| · 물 건 비                           | 32,070,181  | 6.2  | 30,857,205  | 7.0  | 1,212,976  | 3.9   |
| · 이 전 경 비                         | 121,783,586 | 23.4 | 114,646,042 | 25.8 | 7,137,544  | 6.2   |
| · 자 본 지 출                         | 319,182,958 | 57.5 | 252,358,474 | 53.5 | 66,824,484 | 26.5  |
| · 용 자 및 출 자                       | 7,678,000   | 1.5  | 3,170,000   | 0.7  | 4,508,000  | 142.2 |
| · 보 전 재 원                         | 1,815,143   | 0.3  | 1,815,143   | 0.4  | -          | -     |
| · 내 부 거 래                         | 6,198,294   | 1.2  | 5,698,294   | 1.2  | 500,000    | 8.8   |
| · 예비비 및 기타                        | 8,667,439   | 1.7  | 7,817,668   | 2.2  | 849,771    | 10.9  |
| 특 별 회 계                           | 130,441,791 | 19.6 | 128,393,777 | 21.9 | 2,048,014  | 1.6   |
| · 지역개발기금                          | 56,253,914  | 51.6 | 56,253,914  | 52.3 | -          | -     |
| · 공영개발사업                          | 52,735,915  | 48.4 | 51,354,649  | 47.7 | 1,381,266  | 2.7   |
| · 농어촌소득<br>개 발 기 금                | 3,140,385   | 1.46 | 2,562,625   | 12.3 | 577,760    | 22.5  |
| · 환경기초시설<br>운영관리<br>대청호특별대책<br>지역 | 1,910,526   | 8.9  | 1,866,355   | 9.0  | 44,171     | 2.4   |
| · 의료보호기금                          | 16,401,051  | 76.5 | 16,356,234  | 78.7 | 44,817     | 0.3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액 4,567억 2,040만 9천원보다 18.3%인 835억 2,829만 2천원이 증액된 5,402억 4,870만 1천원 규모임.

□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6.2%인 24억 9,551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증원(76명),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99명)된데 기인함.
-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9%인 12억 1,29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외 홍보용 영상물 제작, 과적검문소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 동관청사 유지비, 도정업무추진 국내여비,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지방직 전환에 따른 것임.
-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2%인 71억 3,75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연수, 도정업무추진, 예술단체지원, '95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등이 증액된 것임.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6.5%인 668억 2,448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장비 및 소방차량 구입, 경지정리 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양산 철도건설목 대형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로확포장비등임 증액된데 기인됨.
- 용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보다 142.2%인 4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택개량 용자금 지원사업임.
- 보전재원은 증감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8.8%인 5억원이 증액된 것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인 회계상호간 전출에 따른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10.9%인 8억 4,977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             |                |
|-------------|----------------|
| - 의회비       | 2,002만 8천원     |
| - 일반행정비     | 25억 2,419만 8천원 |
| - 사회복지비     | 43억 5,349만 2천원 |
| - 산업경제비     | 275억 7,311만원   |
| - 지역개발비     | 199억 9,899만원   |
| - 문화 및 체육비  | 32억 932만 2천원   |
| - 민방위비      | 24억 8,738만 1천원 |
| - 지원 및 기타경비 | 53억 6,177만 1천원 |

이며,

□ 세출예산을 주요경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징수교부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는

|                 |       |
|-----------------|-------|
| -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 46억원  |
| - 추가징수 교부금      | 45억원  |
| - 특별회계 전출금      | 5억원   |
| - 예 비 비         | 4억원이며 |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은

|                        |       |
|------------------------|-------|
| - 농지전용 부담금등 환원투자사업     | 6억원   |
| - 지방도 정비 및 지방채사업       | 254억원 |
| - 재해취약지 개선등 지방교부세 사업   | 239억원 |
| - 청소년 육성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   | 25억원  |
| -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등 국고보조사업 | 94억원  |
| -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등 기금사업    | 2억원   |
|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 2억원   |

세째, 중점시책투자사업비로는

< 사회복지분야 >

-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등 사회복지사업 5억원
- 차집관로개설등 환경사업 2억원

< 문화체육분야 >

- 문예진흥 및 문화재 보존사업 5억원
- 체육진흥 사업등 5억원

< 농수산분야 >

- 농업생산기반 확충등 농가소득 증대사업 5억원

< 지역개발분야 >

- 상하수도 정비등 주민 숙원사업 14억원
- 관광개발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11억원

< 일반행정분야 >

- 청사정비 및 전산망 장비 보강사업등 8억원

< 도로교통분야 >

- 도로정비사업등 25억원
-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등 20억원

< 치산치수분야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등 6억원

< 민방위소방분야 >

- 소방장비 정비등 2억원

< 세계화추진 >의 지방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 도민 의식 개선사업, 세계명품화 사업, 관광의 세계화 및 국제통상협력 증진등 5억원

넷째, 재정재원으로는

- 도정정보종합센터 설치 용역등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경정재원 5억원을 예비비등에 계상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 가경3지구 조성 공사비 15억원
- 가경3지구 배수시설부담금 5억원
- 부용공단 공장용지 정산반환금 13억원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 예비비에서 19억원은 감액조정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 의료보호 사무보조단가인상 및 예비비 45백만원

○ 대청호 특별회계는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4백만원

### 3. 검토의견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6,706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851억 1,400만원보다 14.6%인 85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35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지방채와 지방교부세,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그중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각종투자사업에 배분하고 있어 적은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하겠음.

#### < 세입 부문 >

##### ○ 지방세 징수에 만전

지방세의 경우 120억원은 취득세(54억) 등록세(66억)로 추가 증액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 1,152억원에 달하고 있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수전망이 어두운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됨.

세출 수요충족을 위한 무리한 세수추계가 되지않도록 취득세, 등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 세입추계의 현실화 노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전망을 분석하여 발생예산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세계잉여금이 매년 큰 규모로 발생('95 기정 250억, 추경 106억) 하고있어 추경예산편성이 관례화 됨에 따라 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는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여 세계잉여금의 발생소지를 최소화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세 출 부 문 >

○ 시상금 및 포상금 운영 개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상금과 포상금은 세계화 추진유공자 표창등 9건에 총 3,825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합하면 총 94종에 3억 9,700만원에 달하여 상의 종류가 많으며 각종 상의 단위당 상금액도 형평성을 결하고 있어 산정근거에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봄.

상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으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사한 행사나 대회는 통폐합하고 단위당 상금액도 형평성있게 조정하는등 시상금 운영을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됨.

시 상 금 내 역

(단위 : 천원)

| 시 상 건 명         | 시상금액 (인원, 기관)  | 단위당 시상금액                               | 비고    |
|-----------------|--|--|-------|
| 세계화 추진유공자 표창    | 1,000(10명)   | 1인 100                                 | P 59  |
| 소송 수행자 포상       | 1,000(10건)   | 1건 100                                 | P 66  |
| 지역물가 안정관리 포상    | 6,450<br>최우수기관 (1) 1,500<br>우수기관 (2) 2,000<br>장려기관 (3) 1,500<br>우수공무원 (15) 450 | 1기관 1,500<br>" 1,000<br>" 500<br>1인 30 | P 71  |
| 광고물정비 유공공무원시상   | 600(15)  | 1인 40                                  | P 92  |
| 도세징수포상          | 10,000 (4)   | 1기관 2,500                              | P 97  |
| 노인습씨자랑시상        | 500(10)  | 1인 50                                  | P 144 |
| 성년대상자 기념품       | 1,000(20)  | 1인 50                                  | P 198 |
| 농어촌 소득개발 유공자포상  | 11,000<br>우수상 (1) 5,000<br>장려상 (2) 6,000                                       | 1인 5,000<br>1인 3,000                   | P 218 |
| 농산물품평대회 우수시군 시상 | 6,700<br>최우수기관 (1) 3,200<br>우수기관 (1) 1,500<br>장려기관 (2) 2,000                   | 1기관 3,200<br>" 1,500<br>" 1,000        | P 272 |

○ 본예산심의시 삭감된 경비의 추가계상

'95 당초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경비 또는 공익에 반하는 일부경비에 대하여 삭감조치를 하였으나, 금회추경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의 일부가 다시 계상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수정을 가하거나 추가사유가 발생했을때 편성하는 것인만큼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그 사유가 미약하다고 하겠으며,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본예산 삭감 경비의 추경계상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당초예산삭감액            | 추경예산계상액 | 비고       |
|--------------|--------------------|---------|----------|
| 국내여비(POOL)   | 100,000중 50,000 감  | 200,000 | P 59, 60 |
| 민간경상보조(POOL) | 660,000중 200,000 감 | 140,000 | "        |
| 도세징수포상       | 25,000 감           | 10,000  | P 97     |
| 취약구입         | 3,420 감            | 2,850   | P 151    |
| 개량마스크(증평)    | 2,688 감            | 2,688   | "        |
| 포상금등         | 15,960 감           | 11,000  | P 218    |
| 개량마스크(본청)    | 27,992 감           | 27,992  | P 220    |

○ 예산 포괄편성 방법 개선

내무부의 '9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명료성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포괄 편성치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5 당초예산(안)에서도 포괄계상된 부분이 있어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금회 추경에 그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음.

포괄 예산은 예산운영에 탄력성과 신속성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집행시 배분상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배분내역이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명기되어야 할 것임.

예산 포괄 편 성 내 역 (단위 : 천원)

| 금 량 비  | 국 내 여 비 | 보 상 금   | 민간경상보조  |
|--------|---------|---------|---------|
| 50,000 | 200,000 | 100,000 | 140,000 |

※ 추경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P59 ~ 60